

## 사생준수내규

|                  |                  |
|------------------|------------------|
| 제정 1989. 3. 1.   | 개정 2014. 12. 30. |
| 개정 2002. 5. 9.   | 개정 2015. 6. 3.   |
| 개정 2004. 3. 18.  | 개정 2016. 2. 1.   |
| 개정 2006. 7. 27.  | 개정 2016. 6. 28.  |
| 개정 2012. 1. 1.   | 개정 2017. 1. 1.   |
| 개정 2013. 1. 1.   | 개정 2019. 9. 1.   |
| 개정 2013. 12. 23. | 개정 2022. 1. 1.   |
| 개정 2023. 6. 1.   | 개정 2023. 11. 8.  |
| 개정 2024. 5. 1.   | 개정 2024. 7. 1.   |
| 개정 2025. 1. 31.  | 개정 2025. 10. 16. |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한림대학교 학생생활관(이하 '생활관'이라한다) 규정 제31조에 의거하여 사생으로서 준수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생호실배정)** 1학기에는 같은 과 선후배로 2학기에는 타학과 선후배로 배정하는 것과 배정된 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학생생활관장(이하 '관장'이라한다)은 배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외부인 제한)** 사생은 사감의 허가 없이 외부인을 사내(舍內)에 대동할 수 없으며, 특히 외부인의 숙박을 금한다.

**제4조(일과표)** 사생은 다음 일과표를 준수하여야 하며 취침 시간후의 면학은 자유학습실을 이용한다.

| 내 용 | 시 간         | 내 용 | 시 간   |
|-----|-------------|-----|-------|
| 개 문 | 05:00       | 폐 문 | 24:00 |
| 점 호 | 24:00~24:30 | 소 등 | 01:00 |

**제5조(점호)** ① 점호는 매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점호는 관장 또는 사감 책임 하에 시행한다.

③ 점호 시 사감은 다음 사항을 점검한다.

1. 인원점검
2. 환경정리
3. 전기용품
4. 기타

**제6조(점검일지 작성)** ① 사감은 폐문 후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 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인원 현황
2. 환경 현황
3. 전기용품 현황
4. 기타 현황 (환자발생 등)

② 사감은 작성한 일지를 주기적으로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광고물 게시)** 광고물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관장의 허가를 얻어 지정된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외박)** ① 평일 및 주말 등 외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외박을 신청하여야 하며, 외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외박으로 하여 벌점을 부과한다.

② 당일 외박신청은 23:00까지 하여야 한다.

**제9조(면회)** ① 면회시간은 09:00~20:00시로 한다.

② 면회자는 면회 신청부에 기재사항을 기입한 후 사감의 안내를 받아야 된다.

③ 면회는 지정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사실(舍室) 출입을 금한다. 다만, 가족이 방문하였을 때에는 관장, 사감 또는 관계직원의 허락을 받아 출입할 수 있다.

**제10조(상점 및 포상)** ① 공동체 생활에서 우애, 자율, 협동 등의 기본생활 정신 함양과 면학분위기 제고를 위하여 노력한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상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화재 및 긴급환자 발생시 솔선수범하여 신속하게 대처한 학생(3~5점)
2. 규정위반사항을 예방 및 신고한 학생(1~3점)
3. 생활관지정 강좌, 특강, 간담회, 소모임 등 행사 및 교육프로그램에 참석한 학생(2시간당 또는 1회에 1점)

4. 상기 3호에 참석하고 입상 선발된 학생(1~3점)
5. 노력봉사활동에 참석하고 학교의 다른 혜택과 중복되지 않은 학생(4시간에 1점)
6. 기타 평상시 및 점호 등에서 예의 있는 생활태도로 타의 모범이 되어 담당사감의 추천으로 관장이 인정한 학생(1~2점)

② 제1항의 근거로 공동체 생활에서 생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기당 상점이 10점 이상이고 그에 준하는 자는 입사관리비 할인 또는 감면, 입사우선선발 혜택 등을 부여하는 포상을 관장이 실시할 수 있다.

③ 상점은 입사하지 않은 학생도 사전에 상점 신청을 하면 적용 받을 수 있으며, 벌점이 있는 경우에는 상점과 상쇄하여 관리 한다.

**제11조(벌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해당 벌점을 부여한다.

1. 벌점 15점 : 즉시퇴사

- 가. 방화 및 화재 요인(인화물질, 위험물 반입 및 사용)을 제공한 행위 **[영구퇴사]**
- 나. 절도, 폭행, 도박, 성범죄, 음란 등 비도덕적인 행위 **[영구퇴사]**
- 다. 고의로 기물을 파손, 훼손한 행위
- 라. 이성관에 입사시키거나 입사한 행위
- 마. 이성 동반입실 행위**[영구퇴사]**
- 바. 이성을 숙박시키거나 숙박한 행위**[영구퇴사]**
- 사. 비사생 숙박시키거나 숙박한 행위
- 아. 생활관 내 흡연 행위(전자 담배류 포함)
- 자. 출입카드(학생증)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도받아 사용한 행위

2. 벌점 10점

- 가. 미 허가 전기(열)용품(전기장판, 커피포트, 히터, 선풍기 등)의 반입 또는 사용한 행위
- 나. 폐문 후 외부로 무단이탈한 행위

3. 벌점 7점

- 가. 대리점호를 시키거나 이행한 행위
- 나. 지정된 관 또는 호실 외 동반 입실, 무단 출입하거나 출입시킨 행위
- 다. 출입카드(학생증)를 미사용하여 출입한 행위
- 라. 생활지도 및 안전을 위한 사감의 지도를 미 이행한 행위
- 마. 반려동물을 출입시키거나 사육한 행위

4. 벌점 5점

- 가. 공용물품(사생실 및 휴게실 비품, 다리미, 건조대 등)을 외부 반출한 행위
- 나. 생활관내의 집기를 임의로 이동시킨 행위
- 다. 타 사생 물건을 허락 없이 사용 하거나 훼손한 행위
- 라. 음주 후 구토 시 후처리 않거나, 음주소란을 일으킨 행위
- 마. 생활관내에서 음주(허가받지 않은 주류 반입 포함)한 행위

5. 벌점 3점

가. 무단외박한 행위

단, 자율기숙사는 안내된 점호일에 입실기록 또는 외박신청이 없을 시 무단외박으로 간주

- 나. 생활관 주관의 교육 불참(오리엔테이션, 소방훈련 등)한 행위
- 다. 제출서류(결핵진단서) 미제출한 행위(재 불이행시 퇴사)
- 라. 보호자 연락처 및 제출서류 등 허위 기재한 행위
- 마. 비품집기 훼손(낙서, 칼자국, 스티커 부착 등) 행위
- 바. 쓰레기(음식물 포함), 오물 등을 지정된 장소 외 무단 배출 및 투기, 공동시설 사용 후 뒷정리를 하지 않은 행위
- 사. 운영시간 외 편의시설(TV, 세탁기 등) 사용한 행위
- 아. 호실 내 전기·열 기기(냉난방기, PC, 고데기 등) 전원끄지 않고 외출하는 행위
- 자. 퇴사 후 호실 내 정리(쓰레기 배출 등)하지 않은 행위
- 차. 퇴사 시 출입카드(카드키) 미반납 또는 퇴사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카. 청소 점호 시 호실 청소 상태 불량 행위(청소 지시 불이행시 벌점 누적 부여)

6. 벌점 1점

가. 지정구역 이외에서 배달음식 등을 취식한 행위

나. 마스터키 2회 사용한 행위(이후 매회 추가 벌점)

다. 공용(호실)냉장고 보관 음식물 관리(상하거나 악취 발생 등) 불량 및 정리하지 않은 행위

라. 공동장소(복도 등), 택배실(보관소) 등에 물건·짐을 방치한 행위(3주 후 재 불이행시 물건·짐 폐기처분)

마. 호실 청소상태 불량

바. 배달음식을 지정구역 이외에서 받아 반입한 행위(자율기숙사 포함)

사. 점호 중 이동한 행위(자율기숙사 포함)

**제12조(상점 및 벌점 부여)** ① 상점 및 벌점 부여 권한자는 관장, 생활관 직원 및 사감으로 한다.

② 상점 및 벌점의 최종 승인은 관장이 하며, 부여정도 등을 확인하고 조정할 수 있다.

③ 관장은 HID 및 타 부서 등에서 상점 및 벌점 부과 요청 시 검토하여 부여 할 수 있다.

**제13조(징계)** 징계에는 벌점부과, 퇴사처분 및 입사제한으로 구분한다.

1. 벌점부과: 제11조의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에게 벌점을 주는 것으로 벌점 받은 학생의 명단과 벌점을 매주 게시판에 공고한다.

2. 퇴사처분: 벌점 누계가 15점 이상인 사생에게 1회 경고 후 추가 벌점 부과시 퇴사를 명하는 것으로 해당 사생에게 통보하고 즉시 퇴사 조치한다.

단, 즉시(영구)퇴사에 해당하는 벌점대상자는 경고없이 즉시 퇴사 조치한다.

○ 소청제도: 소청위원회에서 소명기회 부여 및 퇴사 여부 결정 함

- 소청위원회: 관장, 담당지도사감, 타관 지도사감 등 3인 (필요 시 학생처장 등 보직교수 참여)

3. 입사제한: 영구퇴사에 해당하는 벌점 대상자는 재입사할 수 없다.

**제14조(변상)**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생은 지체 없이 변상 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방화

2. 시설 및 기물의 훼손

3. 비품 및 일반용품 분실

② 제1항으로 변상하지 않을 경우 학생생활관장은 교무처장 및 학생처장에게 통고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재학생에 대한 수강신청접수 보류

2. 휴학생에 대한 복학원서 또는 수강신청접수 보류

3. 졸업, 퇴학, 제적생에 대한 제 증명서의 발급 보류

**제15조(연대책임)** 제11조 및 제14조 각 호 중 2인 이상의 공동책임 이 따르는 조항에 대해서는 호실 학생 전원에게 각 호에 준하는 벌점을 부과한다.

**제16조(화기 및 청소책임)** 학생은 각자 사실 내의 화기 단속과 청소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세탁)** 학생은 세탁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정된 세탁실 이외에서의 세탁을 금한다.

**제18조(부대시설 이용)** ① 모든 부대시설물의 이용시간은 23:00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부대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TV시청 2. 헬스장 3. 탁구장 4. 세탁실 5. 체육기자재

② 모든 부대시설물은 공휴일의 경우 사감의 허가를 얻어 24:00 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제19조(환자)** 학생 중 환자 발생 시 이를 발견한 학생은 즉시 사감 또는 관리실에 통보한다.

**제20조(긴급사태)** 긴급사태가 발생할 때, 사생은 생활관내 방송 및 사감의 지시 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이 내규는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내규는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개정내규는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④ 이 개정내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⑤ 이 개정내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⑥ 이 개정내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⑦ 이 개정내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⑧ 이 개정내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⑨ 이 개정내규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⑩ 이 개정내규는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⑪ 이 개정내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⑫ 이 개정내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⑬ 이 개정내규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⑭ 이 개정내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⑮ 이 개정내규는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⑯ 이 개정내규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⑰ 이 개정내규는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⑱ 이 개정내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⑲ 이 개정내규는 2025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 ⑳ 이 개정내규는 2025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